

# 전주신성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1999. 3. 3. 관리 제 280호)  
개정(2002. 12. 23. 관리 제 1937호)  
개정(2005. 2. 관리 제 호)  
개정(2006. 3. 30. 관리 제 1153호)  
개정(2007. 3. 관리 제 호)  
개정(2009. 2. 10. 관리 제 397호)  
개정(2010. 2. 11. 관리 제 호)  
개정(2011. 2. 22. 관리 제 호)  
개정(2012. 2. 10. 관리 제 호)  
개정(2014. 4. 15. 신성초등학교-3438)  
개정(2017. 4. 14, 신성초등학교-3045)  
개정(2019. 9. 24, 신성초등학교-9355)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본교는 ‘전주신성초등학교’라 칭한다.
- 제3조(위치) 본교는 전주시 완산구 평화8길16-36(평화동 2가 229번지)에 둔다.

##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5조(학년·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와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6조(휴업일 등)

-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하계휴가
  3. 동계휴가
  4. 학년말휴가
  5. 개교기념일 : 12월 1일
  6. 주5일 수업제에 의한 매주 토요일휴업일
  7.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휴업일
- ② 학교장은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휴가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실시한다.

- ③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재량휴업을 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실습 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편제) 본교의 학급편제는 당해연도 학급배정에 의한다.

제8조(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전라북도전주교육청교육장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 제4장 교과 및 교육과정·수업일수와 과정수료의 인정 및 졸업

제9조(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10조(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제2호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10분의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교류 체험학습)

-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류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현장체험학습은 개별 위탁 체험학습, 집단 교류 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 ③ 개별 위탁 체험학습 기간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체험학교의 형편에 따라 1개월(4주)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되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실시할 수 있다.
- ④ 집단 교류 해외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학생해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⑥ 교류 체험학습은 아동중심의 다양한 체험학습운영을 통하여 학습흥미와 동기를 강화하고 아동 각자의 독특한 개성이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실시한다.
- ⑦ 이 외 교류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은 상급 기관의 최근 지침에 의거 학교장이 이를 시행한다.)

제12조(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별지 1호 서식의 졸업장을 수여한다.

##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취학의무의 면제 등

### 제13조(입학시기)

- ① 본교의 입학시기는 학년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② 본교의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4조(입학결정)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 통지를 받은 아동과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의 배정과 학교장의 입학 허가로써 결정한다.

### 제15조(편입학)

- ① 외국체류 중 귀국한 아동의 편입학은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 한다.
- ②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편입학 아동은 학교장이 요구하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전학) 본교에서 타교로 전학할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17조(취학의무의 면제)

-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결정한다.
- ②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일정기간 외국에서 취학을 목적으로 그 보호자와 동반 체류하는 경우 그 사유와 여권 사본 등을 갖추어 이를 처리한다.

##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제18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으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하거나 상급학교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

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이를 선정한다.

제19조(조기진급의 범위) 조기진급이란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함을 말한다.

제20조(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대상자에게 교과목별 조기이수의 인정을 위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교감과 교사 중에서 학교장이 인정하는 위원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에 관한 사항
  - 3.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결과 조기수료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 4.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학교장의 심의를 의뢰한 사항

## 제7장 출결사항

제 21조(출결사항) 학생 출결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당해 연도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훈령)을 근거로 관리한다.

제22조(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근거, 2019년 현재)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 자매	1

## 제8장 학생시상 및 학생징계

제23조(시상 종류)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24조(시상 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25조(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추천을 상신한다.

제26조(징계)

-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생활선도위원회(교감(위원장), 교무, 학년부장, 인권부장(간사))의 회의를 거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징계를 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추가안 : 기타 사항은 생활규정에 의거한다.

## 제9장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7조(직무)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 ① 취학 및 입학 유예, 면제 등 신청 심의
- ② 미취학, 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보호자 면담 등

제28조(구성 및 임기)

- ① 위원장은 학교장이며 당연직으로 한다.
- ② 내부위원은 교감, 교무부장, 인성부장 3인으로 구성한다.
- ③ 외부위원은 지역아동보호기관 관계자, 학교전담경찰관 등 학교 외부 전문가 2인, 학부모 대표 1인 등 3인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한다.

제29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 내부위원, 학교 외부 전문가는 당해 직위 재직 시 연임이 가능하며 학부모 위원의 경우 1년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위원회 개최)

- ① 학교장이 개최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한다.
- ② 개최시기는 학기 시작 전 및 학기 시작 직후 유예, 면제 등 신청 심의를 위해 개최할 수 있다.(단,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
- ㉠ (정기)1차: 1월 1일부터 예비소집일 5일 전까지의 신청분은 예비소집일 4일전부터 예비소집일 전일 중 개최한다.
- ㉡ (정기)2차: 예비소집일 이후부터 입학 전전일(2일전)까지의 신청분은 입학 전일(1일전) 심사를 원칙으로 하나 공휴일 등 학교 사정으로 부득이할 경우 신청 후 10일 이내에 개최할 수 있다.
- ㉢ (수시): 미취학, 미입학 및 무단결석 아동 발생 시 보호자 면담 및 학기 중 유

예 등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수시 개최가 가능하며 신청 후 10일 이내에 개최한다.

#### 제31조(의결)

- ① 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가부 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위원회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제32조(위임 규정)

제10장의 조항에 규정된 것 외의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장 기타

제33조(학교규칙개정절차) 학교장은 학교규칙의 개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이를 확정하고 시행한다.

#### 부칙(1999. 3. 19. 관리 제28호)

- ①(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시행세척) 본 학교규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척은 학교장이 정한다.

#### 부칙(2002. 12. 23. 관리 제1937호)

- ①(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시행세척) 본 학교규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척은 학교장이 정한다.

#### 부칙(2005. 2. . 관리 제 호)

- ①(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시행세척) 본 학교규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척은 학교장이 정한다.

#### 부칙(2006. 3. 30. 관리 제1153 호)

- ①(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시행세척) 본 학교규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척은 학교장이 정한다.

#### 부칙(2007. 3. . 관리 제 호)

- ①(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세칙) 본 학교규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칙(2009. 2. 10. 관리 제 397호)**

①(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세칙) 본 학교규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칙(2010. 2. 11. 관리 제 호)**

①(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세칙) 본 학교규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칙(2011. 2. 22. 관리 제 호)**

①(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세칙) 본 학교규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칙(2012. 2. 10. 관리 제 호)**

①(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세칙) 본 학교규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칙(2014. 4. 15. 신성초등학교-3438)**

①(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세칙) 본 학교규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칙(2017. 4. 14. 신성초등학교-3045)**

①(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세칙) 본 학교규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칙(2019. 9. 24. 신성초등학교-9355)**

①(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9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세칙) 본 학교규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